

## 條例(案) 檢討報告書

###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주요 법적근거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가정의례 심의위원회 등)
  - 제2항 : 가정의례 준칙의 보급·실천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를 둔다.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제1항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이하 “실천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항 : 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국장보다

직급이 낮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무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3조 제8호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4호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의례실천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행정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가정의례준칙의 심의·지도·계통과 가정의례 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건의 등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동 개정 조례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실천위원회를 시정 조정위원회와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 조례 제3조 제14호에 개정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